

2007년 美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본 한미 FTA 협상 평가와 시사점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CONTENTS

목 차

요 약 / 1

I. 2007년 美무역장벽보고서와 한미 FTA / 6

II. 2006년과 2007년 내용 비교 / 7

III. 한국 관련 주요 내용 / 8

IV. 한미 FTA 협상 평가와 시사점 / 25

25 | 가. 평가 및 시사점

27 | 나. NTE 보고서 이슈별 한미 FTA 합의결과 분석

작성자

구미팀 어재선 외 워싱턴 무역관

imaro75@kotra.or.kr

요 약

- 2007년 美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의 내용과 한미 FTA 협상 타결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향후 양국간 통상관계를 전망
 - NTE 보고서는 교역국에 대한 통상압력의 근거이자, 한미 FTA에서 미국 측 요구 사항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음.
 - 한미 FTA 협상결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현 단계에서 미국 입장에서 손익계산서를 파악, 미국이 관철하지 못한 부문에 대한 향후 추가 개방 압력을 예상해 볼 수 있음.
- 지난해와 금년 보고서를 비교해 볼 때, 대부분 유사한 이슈에 대해 부연설명을 가감한 수준에서 차이가 있으나, 한국 측의 일부 개선사항이 제외되고 신규로 강조되는 부분도 존재
 - 단, 금년보고서 분량은 지난해 25페이지(2005년에는 37페이지)에 비해 현저히 감소된 14페이지에 불과
 - 한국시장의 개방화 수준이 높아져 미 업계의 긍정적인 시각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일부 내용은 보고서에서 제외되는 등 무역장벽 내용이 대폭 감소
 - 제외된 내용: 한국 측 주요 개선 사항
 - Internal Supports : 농업부문 국내보조(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AMS)
 - Import Clearance Procedures : 농산물 수입통관 기간 문제
 - 지적재산권 보호관련 장벽 내용 감소
 - 특히, 제약 시장(의료장비 포함)내 무역 장벽으로 지적된 사항이 현저히 감소
- 우리나라는 수세적인 입장 보다는 실리를 추구한 것으로 평가됨.
 - 보다 자세한 손익계산서 진단은 협정문이 나와 봐야 알 것이나, 우리나라는 미국 측 요구사항에 대해서 수세적인 입장을 견지하기 보다는 실리를 추구한 것으로 평가 .

□ NTE 보고서에서 지적된 한국 무역장벽 상당부분 개선 예상

- 농산물(쌀 제외) 고관세 철폐나 지재권 보호, 자동차 부문에 있어 지적된 사항이 상당 부분 한미 FTA 협정에 반영
- 서비스/투자 부문에 있어서도 미측 요구 조건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여 NTE 보고서에서 지적된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 등에 대한 요건 완화
- 의약품에 있어서도 약가 산정 및 보험급여 책정을 위한 투명성 제고 방안 도입

□ 한미 양국간 통상 마찰 가능성 낮아질 것으로 전망

- 한미 FTA 협정 발효 시, NTE에서 연례적으로 지적되어온 미국측의 불만 사항이 상당 폭 해소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이 줄어들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양국 통상관계 발전에 큰 진전이 있을 전망
- 또한 한미 FTA를 통한 다양한 제도적 완충장치 마련으로 통상 분쟁이 미연에 방지될 것으로 전망됨.
- 역외국가의 한국 시장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대 전망
 - NTE 보고서의 대외적인 공신력과 활용도를 봤을 때, NTE 보고서에서 지적한 한국의 무역장벽이 어느 정도 해소됨으로써 제 3국으로부터의 투자유입이 기대되며 이는 국가이미지 및 대외신인도 제고로 연결될 수 있음 .

□ 서비스 및 투자시장 개방 압력은 계속될 전망

- 교육, 의료, 통신, 금융 분야와 같은 서비스·투자 부문에 대한 추가적인 시장개방 요구가 예상되며, 통관절차, 기술표준 설정, 위생검역 절차 등 법 적용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비관세 장벽에 대한 문제 제기도 지속될 전망
- 따라서,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서비스 산업 분야에 대한 경쟁력 향상과, 통상관련 절차적 투명성 확보가 필요할 것임

【2007년 NTE 보고서 한국관련 주요내용과 한미 FTA 협상결과】

대분류	소분류	요구내용	관련품목	2006년 대비 요구 강도	비고/ 협상반영 여부
수입 정책	관세	농산물에 대한 고관세를 완화 (30% 이상)	사과, 배, 야채류, 땅콩, 식 물성기름, 전분 및 가공식 품(복숭아, 과일카테일 통 조림, 허브차, 주스, 땅콩버 터, 잼, 맥주, 일부 낙농제 품), 견과류, 으깬감자, 혼 합야채주스 등	유사	반영 (단, 장기철폐, 계절 관계 등 단계적인 개방으로 한국의 민 감성 최대한 고려)
	관세할당 *저울관세의 무수입물량	관세할당(TRQ)을 국내 생산업자가 관장 하는데 대한 문제	농산물 및 수산물(홍어, 냉 동민어), 베니어 합판	유사	미확인
	최소시장 접근	의무 수입량 준수	쌀	유사	미반영
	통관절차	수입물품 세번(HS)의 자의적 변경 문제 제기	혼 합 제 품 (dehydrated potato flakes, soybean flakes, flavored popcorn, peanut butter chips)	유지 (2006년 신규제기)	미반영(추정)
표준, 검사, 라벨링 및 인증	표준, 적합성 판정 절차	전반적으로 까다로움 - 일부는 국제표준보다 더 제한적임 - 일부는 OECD 기준과 상이	식품 첨가물-	강화	미반영(추정)
		수입제품에 대한 사전승인 의무화 문제	제약, 화학, 화장품, 컴퓨 터, 의료장비, 통신장비 등	유지	확인불가
		광우병 관련 기준을 OIE에서 수립한 국 제기준에 부합시킬 것과 안전한 모든 쇠고기 수입 촉구 * 의약품 및 화장품용 제한적인 쇠고기 수입 절차 시 안전 확인절차 까다로움	쇠고기	유지	미반영
		과도한 수입제한 규정 완화 - Regionalization 방식 채택요구	가금류(닭고기)	유지	미반영(추정)
		생명공학 식품에 대한 검사기준의 국제 기준 합치여부 확인 (WTO에 규제내용 통보 요구) * 한국의 CPB(생물학적 다양성 협약) 비준 및 이행의사 표명에 따라 유전자조작곡물 에 대한 환경위험평가 의무화	생명공학 식품	유지	미반영(추정) * 단, 기술협의 중심의 SPS 정례위원회 절 치 합의
		기능성 식품 첨가제 규제 완화	글루타민, 크레아틴 파우더 등 스포츠 영양소, 엉겅퀴, 월굴, 마늘 등 약초제품	유지	미반영(추정)
		- NOP 증명서 소지자 인정 범위 확대 * NOP: National Organic Program (美농무부 발생 유기농 인증) - 유기농식품 성분 중 생명공학 생산물 포함 금지규정 완화요구	유기농 식품	유지	미반영(추정) * 단, 기술협의 중심의 SPS 정례위원회 절 치 합의
		기술 중립성 확보 및 수입 제한적 표준 금지	통신	유지	반영 * 절차적 투명성 확보

					* 단,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위해 정부의 기술표준정책 추진 권한 인정
		원료의약품신고제도 개선, 임상실험 중복 방지	의약품	감소 (철회)	미반영
		- 불투명한 제도 및 과도한 규제완화 - 신규 의류 라벨링 규칙이 미국 의류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	유전자 조작 가공식품, 의류(신규 제기), 증류주 등	강화	확인 불가
정부 조달	시장접근	지방정부 및 공기업 건설서비스 양허화 한선 인하 요구	건설서비스 등	유지	미반영
수출 보조금	보조금	다자협정에 위배되는 보조금 지급 중단	반도체 등	유지	한국측이 유리하게 반영(무역구제)
		국책은행의 불공정 관행 주시	-	유지	
	지적 재산권	TPM 관련 규정 강화 *TPM: 기술적 보호수단	산업 전반	유지	확인 불가
		인터넷서비스공급자의 책임규정 개선		유지	일부 반영(추정) * 유형별 분류를 통한 처등책임 부여
		저작권 기간 연장(사후 70년)	서적, 음반, 영상물, 인터넷 서비스, 컴퓨터프로그램	유지	반영
		디지털 음원 전송에 대한 제작자의 권리에 대한 독점권 인정 요구		신규	미반영(추정)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	- 일시적 복제물 저작권 강화 - TPM 보호제도 개정 -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중재 절차 강화 요구	컴퓨터 프로그램	강화	확인 불가
	특허, 상표권, 영업비밀	- 특허법 위반 제품의 유통규제 강화 - 외국 상표 무단등록 금지 규정 및 소송절차 개선 - 사업기밀 보호제도 강화	의약품, 농화학제품, 동물 건강제품, 화학제품, 애완동물식품, 초콜렛	유사	일부 반영 * 美, 특허침해시 3배 수 및 부가적 손해 배상제도 도입 철회
	데이터 보호	의약품 개발정보에 대한 지재권 강화	의약품	유사	반영
	일시적 복제	일시적 복제에 대한 저작자의 독점적 권한 요구	컴퓨터 파일	유지	반영 * 단, 공정이용에 대한 예외 기능
서비스	광고	한국방송공사의 광고 판매 독점	광고	유지	확인 불가
	시청각 및 방송	알코올 농도 17% 이상의 주류제품 방송광고 규제	광고	유지	미반영(추정)
		2006. 7.1일부 스크린쿼터 73일로 축소 언급	영화	신규	기반영
		지상파 및 케이블 TV 외국프로그램 방송 비율 제한		유지	일부 반영
		방송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	영화, 만화영화, 대중음악	유지	일부 반영
		위성 재송신 서비스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과 더빙 및 광고 금지		유지	미반영
	보험	우체국, 농협 및 수협에 대한 특혜 시정 촉구	보험	유지	확인 불가
	법률	미국 로펌의 한국 변호사 고용 및 국내 법 자문 불허	법률	유지	반영

	은행	외국계 은행 지사들의 대출한도 결정 시 본사 자본금 인정 요구	은행	유지	미반영(추정)
		지점 자본요건에 기초한 외국계 은행 지점의 운영규제		유지	미반영(추정)
		불투명한 규제 시정		유지	미반영
		신상품 도입 시 승인 요구 시정		유지	미반영
투자	투자	국영기업 및 방송분야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철폐 요구 - 민영화 사례 전무	통신, 방송 등 국영기업, 토지	유지	미반영
		노동시장 유연성과 규제의 투명성 제고		유지	일부 반영 * 공중의견제출제도 도입
반경쟁 관행	경쟁정책	공정위 청문회 절차 투명성 제고 요구 및 상호 합의 권한 부족	-	강화	반영 * 동의명령제합의
전자상 거래	전자상거래	과도한 개인정보 보호	전자상거래	약화	미반영
기타	규제개혁 및 투명성	입법과정 및 법제상의 구체성과 투명성 결여	자동차, 제약, 농업, 금융, 통신 등 광범위한 분야	유지	미반영
		법적용 시 관료의 재량권 개입		유지	미반영
		신규규제 도입 시 최소 20일 공시기간 확대		유지	반영(20 → 40)
	자동차	자동차 관세인하, 세제 개편 및 세부담 경감 요구	자동차	유지	반영
	의약품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이행	의약품, 의료기기	강화	반영 * 절차적 투명성 제고 방안 협정문 명시 * 독립적 이의신청 절차 마련
		의료기기에 대한 과도한 규제 완화(원산지 외의 제조시설도 이동되는 모든 제품에 대한 재등록 의무화)		유지	확인 불가
	통신	정부주도 기술표준 설정 시정 요구	통신	유지	절충 * 기술선택의 자율성 원칙은 인정, 공공정책 목적을 위한 정부의 규범제정 시 투명한 절차 명확히 규정
		통신 서비스 시장의 추가적인 자유화 요구		제외	-
		기간통신 사업자의 외국인 지분 제한 완화(49%)		유지	미반영 * 단, SK와 KT를 제외한 기간통신 사업자에 한해 100% 간접투자(국내법인 설립을 통한 절차) 발효 2년 후 가능

자료 : 2007년 NTE 보고서, 미국의 2006년도 국별무역장벽(NTE)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한미 FTA 협상에 대한 시사점(KIEP, 2006), 한미 FTA 분야별 최종 협상 결과(외교통상부, 2007), KOTRA 업데이트 및 자체 분석

주 : 외교통상부의 '한미 FTA 분야별 최종 협상결과(2007.4)'에 적시되어 있는 사실을 기초로 평가하여 세부 사안에 대해서는 최종 협정문 공개 후 다소 평가결과가 상이할 수 있음.

I. 2007년 美무역장벽보고서와 한미 FTA

□ 2007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의 의의

- 2007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이하 NTE 보고서로 약칭)는 1988년 美 종합무역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에 의거, 美무역대표부(USTR)가 미 업계의 의견 등을 기초로 매년 3월 말 의회에 제출하는 연례 보고서임.
- 대체로 전년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업데이트 하는 형식이며 주요 교역대상국의 무역 및 투자관련 장벽들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따라서 국별 양자 통상현안에 대한 지난 1년간의 진전사항을 평가하고 향후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음.

□ 한미 FTA 타결 후, 양국간 통상관계 전망의 근거로 활용

- 한미 FTA에서 미국 측 요구 사항의 축소판
 - 전통적으로 동 보고서를 기초로 교역국들에게 통상압력을 가해왔으며, 금번 타결된 한미 FTA에서도 미국 측의 주요 요구사항이 담겨있음.
- 미국 측 손익계산서를 파악해 향후 양국 통상관계를 전망해 볼 수 있음.
 - 한미 FTA 협상결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현 단계에서 미국 입장에서 손익계산서를 파악, 미국이 얻지 못한 부문에 대한 향후 추가 개방 압력을 예상해 볼 수 있음.

II. 2006년과 2007년 내용 비교

- 지난해와 금년 보고서를 비교해 볼 때, 대부분 유사한 이슈에 대해 부연 설명을 가감한 수준에서 차이가 있으나, 한국 측의 일부 개선사항이 제외되고 신규로 강조되는 부분이 존재함.
 - 단, 금년보고서 분량은 지난해 25페이지(2005년에는 37페이지)에 비해 현저히 감소된 14페이지에 불과
 - 한국시장의 개방화 수준이 높아져 미 업계의 긍정적인 시각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일부 내용은 보고서에서 제외되는 등 무역장벽 내용이 대폭 감소
 - 제외된 내용: 한국 측 주요 개선 사항
 - Internal Supports : 농업부문 국내보조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AMS)
 - Import Clearance Procedures : 농산물 수입통관 기간 문제
 - 지적재산권 보호관련 장벽 내용 감소
 - 특히, 제약 시장(의료장비 포함)내 무역 장벽으로 지적된 사항이 현저히 감소
 - 2006년 보고서에서는 투명성, 약가 산정, 보험급여, 의료시스템 부재 및 의료기기 수가 산정 등에 대해 총 2.5페이지 걸쳐 문제점을 자세하게 지적하였으나,
 - 금년 보고서에서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실행 규정 발효, 의료기기 재등록 및 한글설명서 구비 의무요건에 대해서만 0.5 페이지 정도로 간단히 언급

III. 2007년 美무역장벽보고서 한국관련 주요 내용

- 63개 미국 주요 교역국 무역투자 장벽 서술내용 중 한국 관련 내용을 분석한 것으로, 한미 FTA가 타결되기 전에 작성된 것임에 주의

□ 교역 전반

○ 제품 교역

- 제품 교역에서 2006년 미국의 對韓 무역적자는 134억불로, 2005년 160억불에 비해 26억불 감소
- 2006년 미국의 對韓 제품 수출은 325억불로 전년도에 비해 16.9%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한국의 대미 제품 수출은 458억불로 전년도에 비해 4.7% 증가
- 한국은 현재 미국의 7대 수입국

○ 서비스 교역

- 국방 및 정부조달을 제외한 미국의 對韓 민간 서비스 수출은 2005년 현재 103억불이며, 같은 기간 한국의 대미 수출은 63억불
- 미국기업 자회사의 한국 내 서비스 매출은 2004년 기준 43억불이며, 같은 기간 한국 기업(majority Korea-owned firms)의 미국 내 서비스 매출은 3.78억불
- 미국의 對韓 FDI(외국인직접투자)는 2005년 기준 188억불로 2004년 168억불에 비해 증가했으며, 미국의 對韓 FDI는 제조업, 금융, 도매 유통 분야에 집중

□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 미 행정부는 2006년 2월 2일 한국과의 FTA 협상 개시 의사를 공식 발표

- 한미 양국간 교역규모는 783억불 대이며 FTA 체결로 더욱 증가 기대할 것으로 기대함. 특히 FTA는 서비스 교역 증대, 농업 및 산업재 교역 증대, 한국 규제제도 투명성 제고, 한국의 지적권보호 개선, 양자간 투자 증대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
- APEC과 WTO 등을 통한 기존의 경제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할 뿐만 아니라, 양국간 공동의 이익 및 가치 증대에도 기여하고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관계 및 교역 강화 의지를 천명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

□ 수입 정책

○ 관세 및 세제

- 한국의 평균 실행 관세율은 11.2%이며 농산물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52%임. UR 협상 시 한국의 관세 상한선은 94.5%로 결정되었으나 대부분의 수산업 제품에는 관세 상한선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 고부가 농수산물에 대해 고관세 부과되고 있는데, 사과, 쇠고기, 통조림 복숭아, 통조림 과일 각테일, 포도 주스, 포도 주스 농축액, 차, 배, 생식용 포도, 오렌지 등 미국에 중요한 농산물에 대한 관세가 35%를 상회함. 대부분의 과일, 견과류, 야채류, 전분, 땅콩, 땅콩버터, 야채유, 주스, 잼, 맥주, 그리고 일부 낙농제품에 대한 관세율도 30%를 초과
- 기타 고관세 적용 농산물로는 체리, 증류주, 냉동 감자 튀김, 으깬 감자, 식당 장비, 스프, 혼합 야채 주스 등이 있는데, 많은 경우 국내 생산이 전무한 농산물에 대해서도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 TRQ(Tariff-Rate Quotas : 저율관세 의무수입물량) 적용하고 있으며, TRQ 이내의 수입물량에 대한 관세는 미미하지만, TRQ 초과 수입 물량에 대한 관세는 매우 높음.
* 꿀: 243%, 분유: 176%, 보리: 324%, 맥주맥: 513%, 감자: 304%, 팝콘: 630%
- 또한, 옥수수 가루, 팝콘, 대두박 등 농산물의 경우, 원자재와 부가가치제품을 함께 묶어 동일 TRQ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각종 TRQ를 관리하는 국내생산자단체들은 예외 없이 원자재를 수입하는 대규모 회원사일수록 더 유리한 TRQ를 할당

- 한국은 국내 농수산물 생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냉동조기, 홍어 등을 포함한 수입 농수산물에 “조정관세(adjustment tariffs)”를 적용하고 있는데, 2006년 기준, 한국은 18개 항목에 대해 조정관세 적용을 연장하면서 이중 8개 항목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함.
- 제지, 완구, 철강, 가구, 농업 장비 등은 UR 결과 실질적으로 관세가 철폐됨.
- 화학제품 관세를 제품 성격별로 각각 0%, 5.5%, 6.5%로 분류함. 그러나, 소다회(soda ash)에는 동 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8%의 관세를 책정
- 과학 장비 관세는 UR 이전 수준에 비해 65% 가량 감소하였으나, 섬유 의복 제품에 대한 관세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음. 인공섬유 및 원사 일부의 경우 30%, 다수의 섬유 및 이불, 베개 등 대부분의 인공 및 기타 제품의 경우 30%, 대부분의 의류 제품의 경우 35%의 관세를 각각 적용

○ 수량 제한

- 한국은 국내생산자단체 또는 구매 관련 정부부처(예: 농수산물유통공사, 조달청) 등을 통해 수입허가제를 운영하며 이를 통해 수입 규모를 양적으로 제한

○ 쌀

- UR 협상 시 한국은 MMA(최소시장접근) 허용의 대가로 수입쌀 관세화에 대해 10년간의 예외를 인정받았으나, 2004년 말을 기점으로 만료
- MMA의 10년 연장에 성공함에 따라 한국의 쌀 수입량은 2005년 225,575톤에서 2014년에는 408,698톤으로 증가할 예정
- 한국은 중국, 태국, 호주산 쌀에 대해서도 국가별할당의무(CSQ)를 지고 있으며, 특별히 미국으로부터는 2014년까지 매년 최소 50,076톤의 쌀을 구매하기로 동의한 바 있음.
- 특히 "밥상용 쌀(table rice)"도 MMA 할당량에 포함됨으로써 쌀시장 접근의 질 또한 개선되었는데, 전체 할당량에서 밥상용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10%에서 2010년 30%로 증가함. 한국의 쌀 MMA 할당량 제도는 2005년부터 도입되었으며 현재는 2007년 할당량을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

○ 관세 절차

- 관세청의 HS 코드 분류에서 “혼합제품(blended products)”을 하나의 항목에 묶어 취급하지 않고, 해당 제품의 주성분에 해당하는 HS 코드 아래에 “혼합 제품” 분류하여, 관세율 상승효과 유발

□ 표준, 시험, 표기, 인증

○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

- 샘플링, 검사, 시험, 인증 관련 절차가 까다롭고 수입품에 불리함. 일부 기준은 국제 표준보다 더 제한적임. 일례로 GRAS(generally recognized as safe)를 아직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산 식품이 통관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짐.

* GRAS :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합격증

- 한국 식약청은 식품 첨가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 범위를 매우 좁게 분류하기 때문에, 미생물 표준 및 식품 첨가제 표준에 의거한 승인을 받기가 더욱 어려움. 또한, 한국 식약청은 혼합 비율이 변경되거나 원료 성분 일부를 대체할 경우 이를 신제품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는 기타 OECD 국가의 기준과 상이함.
- 한국 정부기관은 제약, 화학, 화장품, 컴퓨터, 의료 장비, 통신 장비, 기타 제품 등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많은 종류의 수입제품에 대해 사전승인을 의무화
- 한국의 화장품 규제는 제품의 안전성, 품질, 효능 제고와는 무관해 보이는 번거로운 요구조건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과 규제당국의 투명성 부족은 미국 기업 및 제품의 한국 시장 진입의 저해요인으로 작용

○ 쇠고기

- 한국은 2003년 12월 광우병 발발로 인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기 이전까지 미국의 3대 쇠고기 수출시장으로 2003년 한해 수입규모가 13억불에 달함.

- 2006년 1월 13일 한미 양국은 생후 30개월 이하의 뼈 없는 소고기 수입 재개에 합의했으나, 이어진 3회의 선적분에서 잇달아 뼈가 검출되어 수입이 거부됨. 미국 정부는 현재 한국정부에 대해 광우병 관련 기준을 OIE에서 수립한 국제 기준에 부합시킬 것과 안전한 모든 우육 수입을 허락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 의약품 및 화장품용으로 제한적으로 수입을 허락하고 있는 쇠고기 제품의 경우에도, 광우병 안전 확인 절차를 갈수록 까다롭게 부과하여 미국의 수출에 걸림돌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 가금류

- 미국 정부는 향후 조류독감 발생시에도 미국산 가금류 수입이 전면 금지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한국정부가 수입제한을 발병 지역에만 적용하는 "regionalization" 개념을 채택할 것을 강력히 요구

○ 생물학적 다양성 협약

- 식용 유전자조작곡물(biotechnology crops)에 대한 안전성 평가가 콩, 옥수수, 감자에 대해서는 2004년 2월, 기타 작물에 대해서는 2005년 2월부터 각각 의무화되었음. 현재까지 39종류의 곡물과 11종의 첨가물이 식약청으로부터 승인 획득
- 한국이 2007년 CPB(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생물학적 다양성 협약) 비준 및 이행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유전자조작곡물에 대한 환경 위험 평가가 의무화됨. 현재까지 27건의 자율환경평가 신청이 접수되었고(옥수수 관련 13건, 콩 관련 1건, 면 관련 6건, 알파파 관련 1건, 카놀라 관련 6건) 이 가운데 18건이 완료되었음. 미국 정부는 한국 측에 CPB 이행에 따른 신규 요구조건을 관련 WTO 위원회에 즉시 통보하여 제한 요소를 최소화시켜 줄 것을 요구

○ 기능성 식품

- 미국은 한국식약청이 기능 식품에 다른 나라에서 통용되는 방식대로 스포츠 영양식(sport nutrition) 또는 약초 제품(herbal products) 등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

- 현재 한국식약청은 스포츠 영양소(예 : 글루타민, 크레아틴 파우더)나 약초 제품(예 : 엉겅퀴, 월굴, 마늘)을 기능성 식품에 사용하는 것을 불허
- 기능성 식품은 정, 캡슐, 분말, 액상, 과립 형태로만 시판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nutrition bar" 등의 다른 형태의 판매는 금지

○ 유기농 식품

- 식약청은 미국농무부 인정기관이 발행한 유기농인증(NOP: National Organic Program)을 생산, 제조, 가공업자에 대해서만 인정해주고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인정해주지 않고 있음.
- 수입통관절차 변경 시, 이에 대한 한국식약청 본부와 지방사무소와의 의사소통 부족과 현장검사관의 자의적 법규 해석으로 인해 수입 유기농 제품의 통관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함. 미식약청은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한국 식약청에 문제 해결을 촉구한 바 있음.
- 한국 식약청의 유기농 평가는 시스템 기준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유기농으로 표기된 가공 제품에는 유전자조작제품(biotechnology products)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정부는 미국, 일본, EU 등과 같이 프로세스 기준을 채택해 유기농 인증 제품에 일정 수준의 유전자조작제품이 포함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통신 표준

-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 측에 기술 중립성을 준수하는 한편, 교역을 제한하고 미국 통신 및 방송 기술·서비스 공급업체에게 차별적인 강제적인 표준을 설정과 특정 기술 활용을 요구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강력하게 촉구

○ 라벨링 의무조건

- 미국 수출업자들은 한국의 불투명하고 까다로운 표시 의무조건이 다양한 제품의 한국시장 진입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
- 미국 증류주 업체는 한국의 라벨링 조건이 지나치게 자주 변경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증류주의 최종 사용표기 요구조건을 변경해 수입업자의 재고부담을 최소화시켜달라는 의사 표명

- 한국은 유전자조작 옥수수, 콩, 콩나물, 생감자 및 유전자조작 옥수수와 콩을 포함한 가공 식품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를 지나친 규제라며 문제를 제기함. 이에 따라, 농수산부는 유전자조작 생감자에 대해 표시 의무 면제 의사를 미농무부에 표명하는 한편, 기준 부합 사실을 '자가 표시(self-declaration)'한 뒤 공증을 받은 경우에도 표시 의무를 면제해 줌.
- 2006년 미국의류업계는 한국의 새로운 의류 표기 규제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동 규제안에 따르면 매 의류제품마다 수입업체명 표기를 의무화하도록 되어있어 수천 점의 의복을 여러 수입업자에게 제공할 경우 이와 같은 요구조건은 지나친 부담이 된다는 것이 미국의류업계의 주장임. 미국은 WTO 도하 라운드의 틀 안에서 이 문제를 계속해 협의 중임.

□ 정부 조달

- 한국은 WTO GPA 가입국. 지방정부기관(sub-central government entities)과 정부기업(government enterprises)의 건설 서비스 발주 최소금액(threshold)이 2천 2백만불로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 미국 정부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 미국 업계의 우려 제기에 따라 한국의 국정원은 특정 IT 보안 제품의 조달 시 의무화되어 있던 소스코드 공개 요구조건을 철폐하였으나, 미 정부는 계속해서 국정원이 보안 제품 인증과 관련해 부과하는 문서상 요구조건의 해결을 위해 한국정부와 협의 중임.

□ 수출 보조금

- 미 정부는 한국정부의 특정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 한국정부가 과거 반도체 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 것에 대해 미국은 상계관세를 부과한 바 있음.
- 국책은행인 KDB는 민간기관과 같은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정부보조금 지원의 창구로 활용되어 온 바, 미국 업계는 KDB를 통한 대출 및 투자 관행이 한국 산업계에 과잉투자를 불러왔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미국정부는 이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음.

□ 지재권 보호

○ 지재권 집행

- 한국정부의 지재권 관련 수사, 재판, 유죄판결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2006년 1월에서 10월까지 26,741건의 기소에 2,022건의 체포를 기록함. 기소 중 상당수(19,832건)는 음원 및 비디오 제품관련 위반이고 나머지 기소 건 중 대다수(4,637건)는 상표권 및 불공정경쟁 행위 관련 위반이며, 전체 기소 중 유죄판결 또는 처벌로 이어진 건수 기록은 전무함.
- 정통부의 항시수사팀(SIT)은 수사권을 법적으로 확보하고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의심 기관에 대한 불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한국 경/검찰의 소프트웨어 최종사용자에 대한 수사의 일관성이 제고되었으며 소프트웨어 업계의 제보에 따른 수사의 건수도 증가한 바 있음.
-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업계 제보에 따른 수사 여부, 위반사실이 경미한 경우라 할지라도 권리보유자의 수사 참여 및 수사 결과 공유 가능 여부 등에 대한 SIT팀 수사관행상의 투명성 부족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

○ 일시적 복제

- 한국법률은 컴퓨터의 임시 메모리에서 만들어진 사본을 저작자의 재생 권리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음.
-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실질적 강화를 통해, 저작자에게 영구적 복제와 일시적 복제를 모두 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할 필요성을 한국정부 측에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음.

○ 저작권법

- 미국은 한국의 저작권법 강화를 지속 촉구 중임. 현행법은 기술적보호조치(TPM; 암호와 아이디 등을 사용한 후 저작물을 이용하게 한 조치) 및 TPM 우회 금지를 명시하지 않은 채, 우회 툴의 제작 또는 유통만을 금지하고 있으며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의 책임 및 책임의 제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한 상태임.

- 개정법(amendments) 역시, 서비스 제공업자의 기본 책임범위와 책임 한계 및 예외사항 정의에 불투명한 여지가 남아 있으며, 저작권 보유자의 삭제(takedown) 요청 관련 문서 요구조건도 지나치게 까다로움.
- 저작권법의 27조와 71조상의 개인 복제 예외 규정에 대한 재검가 필요한데 동 예외 규정은 인터넷 환경에는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미국 측의 입장임.
- * 디지털 환경에서 쉽게 전송 가능한 디지털 사본의 불법복제로 인한 폐해는 아날로그 복제의 수준을 훨씬 초과
- 현재 한국은 저작자 사후 50년까지 저작권을 보호함. 현재 미국은 한국 측에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그리고 저작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최초간행일로부터 95년 시점까지 저작권을 보호해줄 것을 요청.
- 2006년 12월 한국은 새로운 저작권법을 통과시켰는데(2007년 6월 발효), 동법에 의거하여 P2P 네트워크 운영자 역시 저작권 보유자가 요구가 있을 경우 침해사본의 유통을 막기 위한 수단 강구 의무를 지게 되었음.
- 그러나, 동법은 음원보호와 개인복제 예외규정과 관련한 이전의 결점을 해결하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디지털 음원 전송에 대한 제작자의 권리는 보상권에만 제한되고 독점권은 인정받지 못함. 또한, 동법은 대학 차원의 폭넓은 복제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CPPA)
 - 동법은 이전 문제 해결과 국제규범과의 부합을 위해 2006년 10월 개정됨. 개정법으로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PDMC)의 권한이 강화되고 지재권 법률 위반에 대한 처벌 또한 강화됨.
 - 미국 정부는 일시적 복제에 대한 보호, 기술적보호조치(TPM)에 대한 보호 개선 등이 가능하도록 법률 강화를 촉구하고 있음.
 - 저작권 관련 분쟁에 대한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PDMC)의 중재는 양당사자가 이를 원할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며, 미국 측은 동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 규정 도입 및 TRIPS 협정에 의거한 가처분 및 일방적 처분을 명시적으로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 데이터 보호

- 한국식약청은 PMS(post marketing surveillance) 단계에 있는 기존 약품을 약간만 변경("salt": slightly altered versions; 염이 다른 것을 사용한 약)한 제품도 데이터 보호 규정에 따라 임상 데이터를 제출해야 한다고 2005년 3월 31일 결정
- 즉, salt 제조사는 기존의 약품이 PMS 단계에 있는 동안 약품을 출시하고자 할 경우, 이에 대해 시판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WTO TRIPS 조약 Article 39.3에 의거하여 임상 데이터 일체를 공개해야 함을 의미
-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해석이 한국의 법률에 명백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는 것이고, 이에 대해 제약업계는 향후 한국식약청이 자의적으로 법률을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을 지적

○ 서적, 비디오, DVD 해적행위

- “출판 및 인쇄 진흥법”은 서적 해적행위 단속을 위한 법집행에 민간분야 참여를 허용하고 있음. 미국 정부는 이에 한국 당국이 서적, 특별히 교과서 해적행위의 효율적 단속을 위해 외국 출판업체 및 외국 저작자와의 공조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
- 불법 DVD의 노상 판매가 불법 생산 시설과 유통망의 확대로 인해 증가 추세로, 미국정부는 한국정부 측에 관련 법집행 및 처벌 조치 강화를 요구

○ 특허, 상표권, 영업비밀

- 한국 특허청은 제약, 농화학, 수의학 제품 일부에 대한 특허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미국 정부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였으나 식약청과 특허청간의 미흡한 의견 조율로 인해 결과적으로 기존 특허권 침해 소지가 있는 제품에 대해 마케팅을 승인할 가능성 배태
- 한국법원은 저작권 보유자의 특허 침해 시 ‘금지명령 구제(injunctive relief)’ 적용에 매우 인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금지명령구제 : 이의신청에 따라 무효화된 특허를 보호하는 가처분 제도
(유럽특허가 관력국가의 법에 따라 무효화 될 수 있는 기능)

- 상표권법은 수차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법적 절차 때문에 미국 기업이 법적 구제를 강구하기가 어려움. 특히, 한국 특허청이 상표권 검토 프로세스를 개발 중이던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 접수된 소위 "sleeper" 상표권 등록분에서 여전히 문제가 발생한 바 있음.
- 화학물질, 애완동물 사료, 초콜릿 등을 판매하는 미국기업들은 한국정부가 제출을 요구하는 제품정보의 양이 너무 많다고 문제를 제기함. 또한, 법적으로는 기업 비밀 정보의 공개가 금지되어 있지만, 일부 정부 관료는 기업의 영업 비밀을 충분히 보호해주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해당 정보가 한국의 경쟁기업이나 협회에 제공되기도 함.

□ 서비스 장벽

○ 광고

- 한국의 광고시장 규모는 전 세계 12위이나 시장 규제는 심한 편으로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를 통해 방송광고가 독점적으로 판매되고 있음.
- 특히, 알코올 농도 17도 이상의 주류 제품 방송 광고가 규제됨.

○ 스크린 쿼터

- 2006년 7월 1일부터, 한국 정부는 한국 영화 방영 의무 일수를 연간 73일로 축소
- 한국 영화의 시장 점유율은 최근 40%를 상회하고 있으며, 서울 지역의 시장 점유율은 2006년 기준 60%에 달함.

○ 지상파 내, 외국 방송 쿼터

- 외국 프로그램 방영시간은 월별 지상파 방송의 20% 내로 제한
- 외산 영화의 경우 총 영화 방영 시간 중 약 75%, 애니메이션은 55%, 팝송은 40% 편성 가능

○ 케이블 TV 쿼터

- 1개 케이블 채널 당 외국 프로그램의 방영 시간을 50%로 제한
- 외국 영화와 외국 애니메이션의 경우 연간 쿼터가 각각 70%, 60%로 배정되어 있는데, 2002년부터 1개 국가의 쿼터량이 전체의 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미국산 영화는 최대 45%, 애니메이션은 39% 까지만 방영 가능
- 케이블 TV, 네트워크, 프로그램 제공업체 등에 대한 외국인 소유 지분도 49%로 제한되며, 위성방송의 경우 최대 외국인 허용 지분은 33%임.

○ 위성 재전송

- 통합방송법에 의거, 외국 프로그램을 위성으로 재전송하기 원하는 한국 기업은 한국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 해당 프로그램 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함.
- 외국 프로그램 재전송 채널 수는 전체 운영 채널의 20%로 제한되는데, 이로 인해 외국 프로그램의 방송 및 방송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고 있음.

○ 더빙(voice-over) 및 지역 광고 제한

- 한국 방송위원회의 방송법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외국 기업은 한국 내 방송 채널에 대해 더빙이 불허됨.
- 한편, 외국 채널은 한국 내 프로그램 재송신시 지역 광고 삽입이 불가

○ 법률 서비스

- 한국 정부는 단계적으로 법률 시장을 개방할 계획으로, 1단계는 외국 법률 자문사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는 것임.
- 외국계 로펌이 한국 내 사무실을 개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한국 변호사 고용이나 국내법에 대한 자문은 불허 계획
- 현재까지 한국 정부는 국회에 이와 관련된 법안 초안 미제출 상태

○ 보 험

- 한국은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보험시장으로 법적으로는 외국인의 시장진입을 규제하고 있지 않음.
- 우체국, 농협 및 수협은 금융감독위원회나 금감원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바, 미국 정부는 이를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한국 정부에 의견 개진 예정

○ 금 융

- 국영 기업인 예금보험공사가 여전히 우리금융지주(한국 내 업계 2위)의 79%, 산업은행의 67.7%의 지분을 보유
- 외국 은행에 대한 지점 설립을 허용하였으며, 자본 시장은 외국인에게 문호가 개방되어 있어 외국 기관의 국내 금융 기관에 대한 비적대적인 인수합병이 가능
- 외국 은행지점이 대출제한 규정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점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것은 금지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제한은 (1)개인 고객에 대한 대출 한도, (3)외환 거래 및 (3)외국은행자본 충족률 및 유동성 요구 조건 등에서 규제를 가하고 있음.
- 국내 은행과 같은 대출비율이 적용되는 외국계 은행의 경우 4대 재벌이 아닌 중소기업에 반드시 일정 부분의 대출자산 포트폴리오를 투자하도록 규정
- 한국 내 모든 은행은 규제 시스템의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으며, 신상품이나 서비스 도입 시, 정부 승인 필득
- 개인의 외환 거래 및 자본 계정 거래에 대한 규정은 대폭 완화되었지만, 기업 및 금융 기관의 외환 거래 및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일부 규제는 여전히 존재

○ 통 신

- 시설 기반 서비스 제공업체의 FDI 비율 49%로 제한
- 시설 기반 서비스 제공 경쟁업체에 비해 비시설 기반 캐리어 들은 통신 네트워크(인터 커넥션 등)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짐.

□ 투자 장벽

- 자본시장 개혁을 통해 외국인 총지분, 외국인 개인소유한도 및 정부 및 기업 채권시장에서의 외국인 투자 상한선이 상향조정되거나 철폐
- 결과적으로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발행한 단기 금융상품의 외국인 구매를 자유화
- 미국 정부는 국영기업 및 기본 통신 서비스 제공업자, 케이블 및 위성 TV 서비스/채널 운영업체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언론매체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을 자유화하도록 한국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음.
- 최근 진행된 국영기업 민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6년에는 단 한건의 민영화도 이뤄지지 않았음. 한 걸음 나아가, 한국 정부는 2005년 11월 30일 발표를 통해 국영 기업의 통제를 강화할 것이며 한국 가스공사를 이룬 시간 내에 민영화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음.
-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금융 지주회사에 대해 확보하고 있는 정부 소유 79% 지분에 대한 민영화 계획 발표도 연기된 상태
- 자유경제구역(FEZs)를 지정함으로써 세제 혜택, 무관세 수입, 유연한 노동 규칙의 적용 및 외국인 생활 조건 개선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이 비즈니스 환경을 좀더 개방하고 자유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반경쟁 관행

○ 경쟁 정책

-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법 집행 및 규제 개혁과 기업구조조정 추진에 있어 갈수록 역할 비중 증대
- 강력한 수사권과 처벌권 보유 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사에 비협조적이거나 위반사실이 발각되었을 경우 행정벌금 부과 가능
- 많은 수의 미국 기업이 공정거래 위원회 수사 시, 검토 및 반대 증거에 대해 응답할 충분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불만을 제기

-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의 청문회 절차에 관한 규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점과 응답 업체와 상호간 합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족한 점을 지적
-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 공정거래 위원회의 활동을 면밀히 관찰함으로써 투명성과 상업 활동의 불필요한 제한이 없는 절차적인 보호가 보장되도록 균형적인 반독점 정책 집행을 촉구

□ 전자 상거래

- 한국은 기술 분야의 선두주자로 세계 제 1위의 가구당 고속 인터넷 접속률을 자랑하고 있음. 한국 정부도 전자 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법안 마련에 적극적
- 한국 국회는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안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업종별 관련 법안을 수정 보강
- 업종별 이슈는 동 법안 통과 후 6개월~2년에 걸친 세부 규정 도입을 통해 해결해 나갈 예정
-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동 세부 규정이 정보의 국경간 흐름을 저해하지 않도록 한국 정부와 공조해 나갈 계획
- 한편, 한국은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담당할 중앙 창구(point of contact)를 개설할 전망

□ 기타 장벽

○ 규제 개혁 및 투명성

- 한국 규제 정책의 투명성 부족은 자동차, 제약, 농업, 금융, 통신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 기업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한국 시장에 참여를 고려 중인 많은 미국 투자자들이 공통으로 제기하는 최대의 문제
- 한국 법률은 종종 구체성(specificity)이 부족하고 한국 관료가 법 집행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해, 법집행 상의 일관성 결여 문제 발생

- 또한, 여러 부처간 소관 및 권한(jurisdiction)이 겹쳐지는 경우가 많아(예 : 공정거래 위원회와 금감원) 한국에서 기업하는 외국 업체들에게 이중고로 작용
- 한국의 행정절차법은 규제 초안에 대해 최소 20일의 공시 기간을 두고 코멘트를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 기간은 너무 짧음. 아울러, 수렴된 코멘트도 최종 규제에는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자동차

- 미국 차의 한국 시장 접근성 확대는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최우선 과제로,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대해 8% 관세 철폐는 물론 엔진사이즈에 기반한 차별적 세제, 표준 및 규제 문제 및 외국차에 대한 편견 등 다양한 종류의 비관세 장벽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함. 한국의 중첩 과세 구조를 감안 시, 실질 세율은 약 12%에 달함.
- 미국 정부는 자동차 규제 및 표준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한국에서의 규제 및 표준 개발에 있어 일찌감치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기 위해 공식적인 메커니즘을 설립할 것을 촉구함. 배기가스 및 안전 표준 분야에 있어서도 특정 우려 사항을 개선할 것을 요구함.
- 과거에 미국 차들은 수입차 반대 캠페인 운동으로 인해 고전한 적이 있는데, 미국 정부는 이러한 반수입차 운동 재발을 근절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 중임.

○ 이륜 구동차

- 한국의 이륜 구동차 소음 기준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지난 몇 년 동안 상당 부분 해소되었지만, 고속도로 통행금지, 높은 관세와 세금, 등록증 부재, 표준 및 인증 절차상의 문제 등이 아직 상존함. 고속도로와 지정 가교 상에서의 이륜구동차 주행 금지는 중량급 이륜구동차의 한국 시장 진입에 커다란 장애 요소로 작용

○ 제 약

- 2006년 12월 29일 한국 보건 복지부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실행 규정이 발효되었다고 발표

-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약가 보상에 있어 네거티브 방식에서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되었다는 점과 의약품에 대한 보상액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협상 절차가 도입된 점임.

○ 의료 시스템 부패

- 한국 의료시스템에는 부패가 만연한데, 복잡한 유통 구조와 정부 의사결정의 투명성 부족이 주된 문제 원인
-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좀더 투명하고, 공평하고, 과학에 기반을 둔 의료시스템 구축에 힘써, 약가 산정, 보험급여 결정, 규제 전반에서 미국 기업들에게 좀더 많은 예측가능성을 제공토록 할 예정

○ 의료 기기

- 한국 식약청은 원산국 외의 제조시설로 이동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재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재등록은 신규 등록과 거의 동일함.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한국 식약청을 상대로 기존의 라이선스로 두 곳의 시설을 커버할 수 있게 해줄 것과 재등록 없이 한국식약청에 변경 통보만을 허용토록 요구
- 이는 검증가능하고 이행 가능한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s)가 도입되어 채택될 경우 가능할 것으로 전망
- 식약청은 의료 장비에 한글로 설명서를 첨부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동 관행이 환자의 안전을 위한 것이지만 다른 많은 국가에서는 DFU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제공해주는 관행을 인정

* DFU : Direction for use

- 다시 말해, 제품 포장에 웹사이트 주소를 명기하거나 제품 포장 안에 DFU가 포함된 CD-롬을 첨부하는 방법이 널리 채택. 미국 정부는 한국 식약청에 대해 제조업체가 어떻게 상기 전자 문서의 형태로 DFU 및 의무 라벨링을 제공할 수 있는지 범위를 제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공표 및 이행할 것을 촉구

IV. NTE 보고서를 통해 본 한미 FTA 협상 평가와 시사점

가. 평가 및 시사점

☐ 우리나라는 수세적인 입장 보다는 실리를 추구

- 보다 세부적인 우리측 손익계산서 진단은 협정문이 나와 봐야 알 것이나, 미국측 요구사항에 대해서 수세적인 입장을 견지하기 보다는 실리를 추구한 것으로 평가

☐ NTE에서 지적된 한국 무역장벽 상당부분 개선 예상

- 농산물(쌀 제외) 고관세 철폐나 지재권 보호, 자동차 부문에 있어 지적된 사항이 상당 부분 한미 FTA 협정에 반영
 - 그러나, 쌀 시장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시켰을 뿐만 아니라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에 대해 명확한 확답을 얻어내지 못한 것에 대하여 Max Baucus(민주당 몬태나주, 상원재정위원장), Chuck Grassley(공화당 아이오와주, 상원재정위원회)를 주축으로 낙농업 지역구 출신 의원들의 비판 성명이 잇달아 발표된 바 있음.
 - 서비스/투자 부문에 있어서도 미측 요구 조건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여 NTE 보고서에서 지적된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 등에 대한 요건 완화
 - 의약품에 있어서도 약가 산정 및 보험급여 책정을 위한 투명성 제고 방안 도입
- #### ☐ 한미 양국간 통상 마찰 가능성 낮아질 것으로 전망
- 한미 FTA 협정 발효 시, NTE에서 연례적으로 지적되어온 미국측의 불만 사항이 상당 폭 해소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이 줄어들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양국 통상관계 발전에 큰 진전이 있을 전망

- 다양한 제도적 완충장치 마련으로 통상 분쟁이 미연에 방지될 것으로 전망됨.
 - 비록 미국 측 요구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은 분야도 각종 위원회(예 : SPS/TBT 위원회)나 작업반(예 : 자동차 표준 작업반/Automotive Working Group, 정부조달작업반) 등의 형태로 여러 제도적 완충장치 등이 마련되어 있어 통상 분쟁을 미연에 방지되는 등 한미 FTA를 통해 양국간 통상마찰의 가능성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역외국가의 한국 시장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대 전망

- NTE 보고서의 대외적인 공신력과 활용도를 봤을 때, NTE 보고서에서 지적한 한국의 무역장벽이 어느 정도 해소됨으로써 제 3국으로부터의 투자유입 및 거래선 변경 등이 기대됨.

- 다만, FTA의 이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합의사항에 대한 해석 등을 둘러싼 기술적인 문제점들이 제기될 수 있으나, 지금까지와 같이 NTE 보고서 등을 통한 공개적인 지적으로까지는 연결되지 않을 전망이며, 이를 통해 국가 이미지 및 신인도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 서비스 및 투자시장 개방 압력은 계속될 전망

- 교육, 의료, 통신, 금융 분야와 같은 서비스·투자 부문에 대한 추가적인 시장개방 요구가 예상됨.
- 또한, 통관절차, 기술표준 설정, 위생검역 절차 등 법적용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비관세 장벽에 대한 문제제기도 계속될 전망
- 따라서,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서비스 산업 분야에 대한 경쟁력 향상과, 통상관련 절차적 투명성 확보가 필요할 것임.

나. NTE 보고서 이슈별 한미 FTA 합의결과 분석

1) 관세 철폐

□ 농산물/축산물

【미국 입장】

- 농산물 고관세 철폐 등 한국시장 개방에 공세적인 입장을 강경하게 견지

【합의 결과】

- 한국으로 수출되는 미국산 농산물이 50% 이상(약 16억불)에 대해 즉시 관세 철폐
 - 밀가루, 사료용 옥수수, 분쇄용 콩, 원피(hides and skins) 및 면화 뿐만 아니라 아몬드, 피스타치오, 버번 위스키, 와인, 건포도, 포도 주스, 오렌지 주스, 신선한 체리, 냉동 프렌치프라이, 냉동 오렌지 주스 농축액 및 애완용 식품 등 고부가 농산물에 대해서도 관세 즉각 철폐
- 아보카도, 레몬, 건자두 및 해바라기 씨에 대해 2년 내 관세 철폐
- 초콜렛, 초콜렛 과자, 스위트 콘, 소스 및 소스조제품(preparations), 사료나 꿀(자주개자리 등), 빵류, 자몽 및 건버섯에 대해서는 5년 내 관세 철폐
- 분유(skim and whole), 식용 유청(whey), 치즈, 호정(덱스트린; dextrin) 및 화공녹말, 보리, 팝콘 및 식용 대두 등에 대해서는 TRQ 적용
- 그러나, 쌀이 양허 대상에서 제외된 한편, 오렌지에 대해서는 계절관세 부과(수확기 현행관세, 비수확기 7년 내 관세 철폐)
- 아울러, 쇠고기에 대해서는 최장 15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되었으며, 특정 기간 동안 수입물량이 급증할 경우 한국서 세이프가드 발동이 가능함.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관세 유예기간이 10년 인정

양허 유형	주요 품목
양허제외	쌀
현행관세, 수입쿼타	오렌지(성출하기), 식용대두, 식용감자, 탈지·전지분유, 연유, 천연꿀
계절관세	포도, 칩용 감자
세번 분리, 장기 철폐	사과, 배
장기 철폐, 세이프가드	쇠고기, 돼지고기(냉장), 고추, 마늘, 인삼, 보리, 맥주맥·맥아, 전분
15년	호두(미탈각), 밤, 잣, 감귤, 송이버섯, 표고버섯, 필터담배
12년	닭고기(냉동가슴살, 날개), 냉동양파, 수박, 보조사료
10년	복숭아, 감, 단감, 감귤주스, 잎담배
9년	딸기
7년	맥주, 아이스크림, 살구, 팝콘용 옥수수
2014.1.1 철폐	돼지고기
6년	옥수수유, 호두(탈각)
5년	완두콩, 감자(냉동), 토마토주스, 오렌지주스(기타), 위스키, 브랜디
3년	해조류
2년	아보카도, 레몬
즉시 철폐	오렌지주스(냉동), 산동물, 화훼류, 커피, 포도주, 밀, 사료용 옥수수, 채유용 대두, 아몬드

* 자료 : 한미 FTA 분야별 최종 협상결과, 외교통상부

☐ 섬유/의류

【미국 입장】

- 한국 내 섬유/의류 제품에 대한 고관세 철폐 보다는 미국 섬유/의류 산업 보호를 목표로, 수세적인 입장에서 협상을 진행

【합의 결과】

- 미국산 1,296개 품목 가운데 97%인 1,265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 되는데, 이는 대미 수입액의 72%에 해당

- 품목별로는 데님, 폴리아미드 장섬유사 등이 즉시 철폐, 3년 내 단계 철폐는 셀룰로오스 장섬유와 유리 섬유 등, 5년 내 단계 철폐는 폴리아미드 강력사 등

☐ 소다회

【미국 입장】

- 공세적으로 관세 철폐 추진

【합의 결과】

- 현행 8% 관세 철폐 관철

2) 표준, 시험, 표기, 인증

☐ 쇠고기 수입 재개

【미국 입장】

- 한국의 수입금지는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즉시 수입재개 촉구

【합의 결과】

- 위생검역 조건 완화 ‘명문화’ 요구 관철 안 됨.
 - 쇠고기 위생 검역 문제는 FTA 협상과 분리하여,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 평가 등급이 나오는 5월 이후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방기로 타협

☐ 통신 표준

【미국 입장】

- 기술 중립성 보장, 강제적인 표준 설정과 특정 기술을 사용할 것으로 의무화하는 것에 반대

【합의 결과】

- 원칙적으로 기술선택에 대한 자율성을 인정하되, 정당한 공공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양국 정부의 기술 표준 정책 추진 권한 인정
- 기술 표준에 관한 정부의 규범 제정 시 절차적 요구사항으로, 표준 채택 전에는 정부가 시장 자율적 해결 가능성에 대해 검토 판단하고 사업자에게 의견 개선 기회를 제공하며, 표준 채택 후에는 사업자의 추가 표준 허용 요구에 대해 검토 서면 응답토록 규정

3) 정부 조달

- ☐ 지방정부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의 건설서비스 양허하한선

【미국 입장】

- 현재 양허하한선(threshold)인 2천 2백만불에서 인하 요구

【합의 결과】

- 양국에서 모두 주정부(미국의 경우), 지방정부, 공기업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양국 모두 GPA수준으로 양허 하한선 유지

- ☐ 국정원의 소스코드 보안지침

【미국 입장】

- 소스코드 공개 요구 조건 철폐

【합의 결과】

- 동 건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 양국 정보기관에서 논의기로 합의

4) 지재권 보호

【미국 입장】

- 일시적 복제, 저작권법(기술적 보호조치, 저작권 보호기간 70년으로 연장),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데이터 보호법 강화 및 서적/DVD 등 해적 행위 단속

【합의 결과】

- 일시적 복제권의 저작권자 권리 인정, 기술적 보호 조치 강화 및 저작권 보호기간 70년으로 연장
- 서적/DVD 등 해적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5) 서비스 장벽

□ 방송 서비스

【미국 입장】

- 한국방송광고공사 방송광고 독점 판매 개선, 지상파 내 외국 방송/케이블 TV 쿼터/더빙 및 지역 광고 제한 완화
- 시설 기반 서비스 제공업체의 FDI 비율 49% 제한 완화

【합의 결과】

- 케이블 방송에 적용되는 국산 프로그램 의무 편성 비율 완화
 - 발효 시, 영화는 30%, 애니메이션 20%로 완화
- 지상파, 위성방송, 케이블, 방송채널 사용사업자(PP) 등이 준수해야 하는 "1개국 쿼터"를 현행 60%에서 발효 시 80%로 상향 조정

- 지상파, 위성방송, 케이블, 방송채널사용사업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 허용 수준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외국인 의제" 규제(간접투자에 대한 규제)는 협정 발효 3년 내 철폐 약속(현행 50%)
- 기간통신 사업체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은 현행 수준인 49%로 유지하기로 하였으나, KT와 SKT를 제외한 기간통신 사업자에 한해 협정 발효 2년 후 외국인 간접 투자(국내법인 설립을 통한 투자) 제한을 100%까지 허용
- 외국방송 재송신 더빙 미허용

☐ 법률 서비스

【미국 입장】

- 외국계 로펌이 한국 내 사무실을 개소할 수는 있지만 한국 변호사 고용이나 국내법에 대한 자문은 불허하려던 한국 정부 계획 지적

【합의 결과】

- 한국 정부는 기존에 계획했었던 외국법 자문 및 외국 로펌의 사무소 개설을 발효 즉시 허용하는 한편, 국내 로펌과의 제휴 허용은 발효 후 2년 내, 합작 및 고용 허용은 발효 후 5년 내 허용

☐ 보험/금융 서비스

*NTE 보고서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일부는 확인 불가, 일부는 부분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추정

6) 투자 장벽

【미국 입장】

- 방송통신 부문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자유화

【합의 결과】

* 전술한 방송서비스 내 외국인 투자 제한 완화 부문 참조 요망

7) 반경쟁 관행

【미국 입장】

○ 공정위 청문회 절차 투명성 제고 및 상호 합의 권한 부족 지적

【합의 결과】

○ 경쟁법 집행 및 협력관련 내용 명시 및 동의명령제 도입 합의

* 동의명령제 : 피심인이 공정위와 합의한 시정방안을 취하는 경우, 위법성 판단을 받지 않고 공정위 절차를 종결하는 제도

8) 기타 장벽

☐ 규제 개혁 및 투명성

【미국 입장】

○ 현행 입법 예고기간 20일을 연장 요구

【합의 결과】

○ 40일 이상으로 연장합의

☐ 자동차

【미국 입장】

○ 현행 관세 8% 철폐 및 엔진 서비스에 기반한 차별적 세제 개편 요구

- 자동차 규제 및 표준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공식적인 매커니즘 마련

【합의 결과】

- 친환경차(10년 간 관세 유예)를 제외한 여타 품목에 대해 관세 즉시 철폐
- 배기량 기준세제 개편
 - 특소세 3단계를 2단계로 개편하여 1000cc 이하 면제, 2000cc 초과 차량은 발효 시 현행 10%에서 8%, 3년 후 5%로 인하
 - 자동차세도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개편
- 자동차 표준협력을 위해 자동차표준 작업반을 설치하여 상호주의를 적용, 자동차 표준 정보 제공 및 업계의 의견/애로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자동차 표준에 대한 양측간 협의 강화

□ 의약품

【미국 입장】

- 약가 산정, 보험급여 결정 등 규제 전반에 걸쳐 예측 가능성 제고

【합의 결과】

- 의약품 관련 규정 공개, 의견 수렴 절차 및 과정 명확화 등 절차적 투명성 제고 방안 규정
- 독립적 이의신청 절차 마련
 - 투명성 제고차원에서 합의, 다만, 독립적 검토기구가 최종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닌 것으로 양해 /끝.

참고문헌

김정곤, 이경희(2006), 미국의 2006년도 국별 무역장벽(NTE)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한미 FTA 협상에 대한 시사점

외교통상부(2007), 한미 FTA 분야별 최종 협상 결과, www.fta.go.kr.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s (USTR), 2006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 www.ustr.gov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s (USTR), 2007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www.ustr.gov

2007년 KOTRA 발간자료목록

● Global Business Report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7-001	세계 바이오에너지 개발동향	2007.2
07-002	일본 히트 상품 속에 숨은 키워드	2007.2
07-003	2010, 중국 비즈니스 이정표: 3가지 의문과 제안	2007.2
07-004	2007년 중국의 외자기업 관련 주요 신규법규와 시사점	2007.2
07-005	대미수출 부진원인과 한미FTA 활용 방안	2007.3
07-006	중남미 신정부 출범과 시장 진출 방안	2007.3
07-007	북핵 사태 해결 이후 북-EU 경제 관계의 향방	2007.3
07-008	일본의 지적재산 강화전략 및 시사점	2007.3
07-009	엔화 동향 및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	2007.3
07-010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대미수출 유망품목 및 진출전략	2007.4
07-011	러시아의 WTO 가입에 따른 환경 변화	2007.4
07-012	2007년 美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본 한미 FTA 협상 평가와 시사점	2007.4

● 무공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7-001	2007년 지역별 진출확대 전략	2007.1
07-002	2007 미리보기	2007.1
07-003	2006년 중국 지재권 백서	2007.2

● 설명회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7-001	2007년 세계시장 진출전략설명회	2007.1
07-002	Post-China 투자진출 전략 설명회	2007.3

작성자

◆ 이정선 과장 (워싱턴 무역관)

◆ 어재선 (구미팀)

Global Business Report 07-012

2007년 美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본 한미 FTA 협상 평가와 시사점

발 행 인 | 홍 기 화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07년 4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9
| (우 137-749)
전 화 | 02) 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 2007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